



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·공포 안내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기획재정부령 제975호(2023.03.20.)로 일부 개정·공포된 「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」의 일부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3. 본 내용은 우리 조합 웹사이트(www.scra.or.kr)「정보마당-법령정보」에서도 확인 가능하며, 개정법률 전문은 법제처 웹사이트(www.moleg.go.kr)에서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○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(제2조의2 신설)

- 개별소비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는 경우
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

※참고사항

반출가격(개별소비세 과세표준) = 판매가격-[판매가격 × *기준판매비율]

*기준판매비율 : 업종 및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판매비용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(추후 확정시 재안내 예정)

※ 붙임 : 관련 법령(요약발췌) 1부. “끝”

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이사장



수신자 회원사 230개사

담당 박종우	부장 김진석	실장 박상광	상무 성정현	이사장 배준영
--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-

시행 서자대조 23-575 (2023.03.20.) 접수 - ()
우 06664 서울 서초구 방배로22길 18, 4층 (방배동, 카렌탈비즈니스센터) / www.scra.or.kr
전화 (02) 525-9082 전송 (02) 525-9063/ 이메일 scra@scra.or.kr / 공개

관련 법령(요약발췌)

1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(제2조의2 신설)

- 개별소비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는 경우 기준 판매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

<신·구 대비표>

종 전	개 정
제2조(판매 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 신청 등)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(반출)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. < 신 설 >	제2조(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신청 등) ----- -----반출의제----- -----. 제2조의2(기준판매비율의 결정) ① 국세청장은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려면 기준판매비율심의회(이하 이 조에서 “심의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② 심의회는 국세청장 소속으로 설치하고,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1. 경상계대학, 학술연구단체, 경제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2.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3.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③ 심의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.

<부 칙>

제1조(시행일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,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